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의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던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대행→위탁방식)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범위·인력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해당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협력수행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책임수행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 및 인력,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권한 위임(안 제29조 신설)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광역 시·도별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권한, 책임수행기관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2.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을 “(측량·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을 “책임수행기관에게”로, “대행하게”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협력수행자”라 한다)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도”라 한다)를 인접한 2개 이상의 광역시

· 도 단위로 묶은 권역별, 광역시·도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조직 및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지적기술(기능자 포함)자격 보유자 1,000명 이상의 상근 인력을 갖추었. 다만, 권역별은 200명 이상, 시·도별은 100명이상일 것

②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조2제2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조의2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요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재조사사업 계획기간 내에 수탁 받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책임수행기관 및 광역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광역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위탁·재위탁 및 제4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의 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2호의2 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협력수행자”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 및 영 제4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 시·도별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2. 영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추진실적보고와 청문

별표의 제목 중 “(제29조 관련)”을 “(제30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u>지적측량수행자</u> (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u>대행하게</u>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측량·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 ----- ----- <u>책임수행기관</u> <u>에게</u> ----- ----- ----- <u>위탁</u> ----- ----- ----- -----.		
1. <u>지적측량수행자</u> 의 명칭		1. <u>책임수행기관</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u>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u>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4. <u>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u> -----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u>지적측량수행자</u> 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u>책임수행기관</u> ----- -----.		
<신 설>		③ <u>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협력수행자”라 한다)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u>		

<신 설>

제4조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도”라 한다)를 인접한 2개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로 묶은 권역별, 광역시·도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조직 및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지적기술(기능자 포함)자격 보유자 1,000명 이상의 상근 인력을 갖출 것. 다만, 권역별은 200명 이상, 광역 시·도별은 100명 이상 일 것

②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
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조2제2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조건 등을 위반하
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조의2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요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재조
사사업 계획기간 내에 수탁
받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
기관을 지정·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책임수

<신 설>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
·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행기관 및 광역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광역 시·도
지사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
수행기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
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위탁·재위탁
및 제4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의 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6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자의 토지출입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및 토지 출입허가증 개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 02. 00.~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적측량수행자 선정)”을 “(책임수행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앞 쪽)

제 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자 허가증
사 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85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자 허가증
소속 /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예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시에 반드시 이 허가증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00시·도)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측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유장비 현황 및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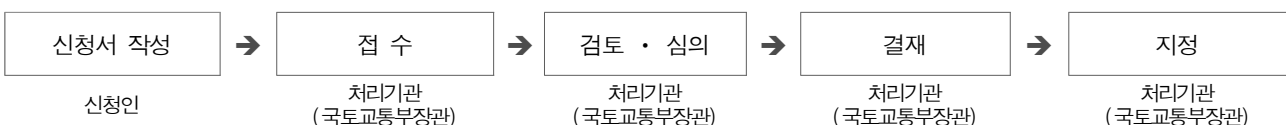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00시·도)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3조(동의서 등) ① 영 제7조제2항----- ----- ----- ----- -----. ② (현행과 같음)